

Ⅲ. 2005년도산 산림사업용 종·묘 규격 및 가격

◎ 산림청고시제2005-110호 : 관보16152호(2005.12.20)

2005년산 산림사업용 종·묘가격 고시

산림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5년산 산림사업용 종·묘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05년 12월 20일

산 립 청 장

○ 성 묘(成苗)

(원/천본)

수종별	묘령	2005년산 가격	비고
강 자 나 송 무	1-1	208,000	
	2-1	299,000	
	2-2	327,000	
	2-3	558,000	
	2-2-3	2,888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낙 전 엽 나 송 무	1-1	315,000	
	2-3	452,000	
삼 나 무 편 백	1-1	337,000	
	1-1	335,000	
	1-1-1	584,000	
	1-1-2	2,551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화 해 백 송	1-1	2,607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	1-1	326,000	
	1-1-2	201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리 기 다 소 나 무	1-0	2,264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	1-1	128,000	
리 기 테 다 소 나 무	1-0	184,000	
	1-1	131,000	
	1-1	190,000	
스트 로 브 자 나 무	1-2	326,000	
	1-2-3	326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	2-2-3	2,680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상 수 리 나 무	1-0	3,118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	1-1	313,000	
자 작 나 무	1-0	588,000	
	1-1	270,000	
	1-1-1	549,000	
물 푸 레 나 무	1-0	1,382,000	
	1-1	193,000	
느 티 나 무	1-0	443,000	
	1-1	253,000	
	1-1-1	522,000	
	1-1-1	1,212,000	

수종별	묘령	2005년산 가격	비고
고로쇠나무	1-0	168,000	
	1-1	393,000	
백합나무	1-0	480,000	
	1-1	983,000	
아까시나무	1-0	208,000	
오리나무	1-0	254,000	
밤나무	저접	1,632,000	
	고접	2,485,000	
민두릅	C1-0	1,189,000	

- 용기묘(2006년산 적용)

(원/천본)

수종별	묘령	2006년산 가격	비고
상수리나무	1-0	452,000	

※ 부대조건

-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%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
-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% 해당액의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
-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
(단, 분뜨기 묘목은 상차 인도가격임)

○ 유묘(幼苗)

(단위 : 원/천본)

수종	묘령	2005년산 가격	비고
강송	1-0	40,900	
잣나무	2-0	96,000	
낙엽송	1-0	45,100	
전나무	2-0	53,300	
삼나무	1-0	52,800	
편백	1-0	51,900	
화백	1-0	45,700	
해송	1-0	37,600	
리기다소나무	1-0	35,600	
리기테다소나무	1-0	38,200	
스트로브잣나무	1-0	60,400	
밤나무	대목	361,400	

※ 본 가격은 생산비(기업이익, 재해손비 등 제외)기준 가격임

○ 종 자(種子)

(단위 : 원/kg)

수 종	종자품질 기준		금 액
	발아율 (%)	효 율 (%)	
강 송	93	87	116,800
잣 나 무	74	69	5,700
낙 엽 송	40	36	167,200
전 나 무	25	23	19,500
삼 나 무	35	28	102,800
편 백	23	21	134,000
화 백	31	23	134,000
해 송	92	88	84,200
리기다소나무	85	77	74,300
리기테다소나무	94	85	142,300
오 리 나 무	59	29	110,100
자 작 나 무	39	22	87,000
물푸레나무	47	44	19,000
아까시나무	64	58	46,100
상수리나무	57	51	2,900
밤 나 무	61	58	2,200
호 두 나 무	66	65	11,700
고로쇠나무	26	21	61,500
느 티 나 무	61	58	73,800
밤나무 접수(천본)	-	-	31,800

※ ○ 종자 수요량을 감안하여 종자 품질기준은 10%까지 내릴 수 있음

○ 본 가격은 생산비(기업이익, 재해손비 등 제외)기준 가격임

- 단, 잣나무, 상수리나무, 밤나무, 호두나무, 고로쇠나무, 느티나무 등의 종자 및 밤나무 접수의 가격은 시·도 조사가 및 임산물 가격동향 조사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임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